

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의 견 서

- 청년청장 조완석입니다.
-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54호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청년기본법」 제15조 및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근거하여 청년친화위원회를 정의하고 동 위원회의 범위와 청년 위촉비율에 관한 사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으로 결정하며
-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공정한 추천을 위한 청년인재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을

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한편,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내 청년정책위원회로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조례 내에서 상이한 용어를 통일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.
- 이는,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내 용어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.
-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1. 6. 17.

청년청장 조완석